

# 복흥초등학교 학칙

개정 2006. 4. 7.  
개정 2007. 4. 1.  
개정 2008. 2. 25.  
개정 2009. 2. 19.  
개정 2010. 2. 11.  
개정 2011. 4. 12.  
개정 2012. 4. 05.  
전면개정 2014. 4. 08.  
개정 2015. 4. 15.  
개정 2019. 4. 11.  
개정 2020. 4.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의 명칭은 ‘복흥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의 위치는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정산로 12 에 둔다.

##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조(학년·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고,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2.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휴가, 단기방학
3.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일 휴업일
4.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재량휴업일

② 제1항의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학생정원)** 학년별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장 교과 · 수업일수 및 평가

#### 제8조(교과·수업일수)

- ① 각 학년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편성 운영한다.
-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학교교육계획에 따른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제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9조(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학교 교육계획에 학생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제5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유예 · 수료 및 졸업

#### 제10조(입학)

-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해 복흥면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가 발부된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와 동시행령 제19조에 의해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
- ② 입학 시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1항에 의해 지정된 날짜로 하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으나 학년초부터 30일이내로 한다.
- ③ 1항에 해당되는 학생이 입학기일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할 때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입학을 허가한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그 성명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전입학)

- ①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0조 및 제11조 1항에 의해 전입학절차를 마친 학생이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전입학하지 않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취학·편입학)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1항과 제29조 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취학 및 편입학하고자 할 때는 제18조 2항의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을 정하여 입학시킬 수 있다.
- ② 재취학을 원하는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이 불가능하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확인 시킨 후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보호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다.
- ③ 동시행령 제19조 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 ①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아동이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 행방불명, 무단가출 등으로 인한 장기 결석자
  2. 소년원법에 의하여 소년원·감화원·소년보호단체·사원·교회·요양소 등에 보호처분을 받아 수감이 불가능한 경우
  3.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등
  4.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5. 사망,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출국, 보호자 해외취업 등

## 6.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7. 기타 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취학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외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으로 취학하지 않는 경우나 미인정 해외 출국하는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신고를 전제로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홈스쿨링 제외)
- ⑥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으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⑦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으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제14조(수료·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15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 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이 조에서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합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
  -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과 교감, 학적 담당교사, 보건교사(또는 생활담당교사), 외부위원 1인(학교 전담 경찰관, 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 1인)의 5인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 발생 시 개최하며,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정기 개최 결과를 매년 3월 말에 교육장에 보고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되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제16조(학생 출·결석 관리) 학생의 출결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 ② 지각 : 등교시간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조퇴 :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 ④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임에게 연락하고 결석계를 제출한다.
- 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280호) 제8조 (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에 의거하여,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며, 출결처리 방법은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⑥ 독촉, 경고 및 통보
  1.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석의 경우는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법정 전염병과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학교 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2조)으로 인한 결석
  2.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훈련 참가, 교환학습, 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6.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7.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10.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제17조(소속 학교 원격수업 수강학생 및 외부기관 수강학생 출결처리)

- ①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수강학생 출석은 학교이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성적 등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②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건강장애학생 포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 및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3. 성적처리는 별표 9 및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시도교육청 및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해당 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5. 병원학교·원격수업 등의 학적은 소속학교에 학적을 두며, 출결은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확인하여 합산 처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8 및 지침에 따라 결석처리 한다. 성적은 소속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하며, 평가(수행 및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6. 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의 학적처리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해 학적 처리하고,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하며, 성적 또한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표 9의 ‘4조의 다목(5)’, ‘4조의 라목 (6)의 (마)’, ‘5조의 다목’ 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7.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 제18조(체험학습)

- ①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체험학습 -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2.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학생의 희망과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역사탐방, 국토순례, 환경관련활동, 외국어체험활동,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 ③ 체험학습의 출석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교환학습 - 1개월(4주) 이내로 운영하되, 단축 또는 연장 가능
  2. 단체 교환학습 - 2주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 - 연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4. 기타 체험학습 - 단체 해외 체험학습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체험학습만 가능하며,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체험학습기간 모두 인정한다.
- ④ 체험학습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교환학습은 학교장이 위탁교육 실시 기관장과 상호 협의하여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여부를 통보한 뒤 실시한다.
  2.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 거주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 체험학습의 신청절차는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7. 교외체험학습의 승인불가 사항은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과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 제19조(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제8조,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제를 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3항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 전라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정(2013.2.6.)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 이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별도의 운영계획에 의한다.

**제20조(학교교육과정위원회)**

- ①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 ②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전 직원과 학부모를 필요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한다.
- ③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기타의 비용 징수**

**제21조(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장 의무교육에 의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을 수 없으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8장 학생포상·학생징계, 학생생활 규정**

**제22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에 의해 표창할 수 있다.
-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3조(징계)**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을 징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특별교육이수
  - 3.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4. 기타 「학교생활규정」에 의한 징계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세부내용은 학교생활

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24조(학교생활규정)

- ① 학생들의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따로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1항의 규정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25조(전교 다모임회 조직)

-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전원으로 구성된 전교 다모임회를 구성 운영한다.
- ② 전교 다모임회는 회장·부회장 및 다모임 활동으로 둔다.
- ③ 전교 다모임회 임원선출과 임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정한다.

#### 제26조(전교 다모임회 운영)

- ① 정기회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갖는다.
- ② 각 다모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 ③ 전교다모임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활동 내용은 교내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한다.

### 제10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 제27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본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 제28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복흥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 제11장 장애인 차별 금지

#### 제29조(차별금지)

-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제31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장 보칙**

**제32조(학칙개정절차)**

- ①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전라북도교육청 학칙개정업무 처리요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안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세부규정)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